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나74803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나7480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20가소127601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8. 20.

판결선고 2021. 9. 1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20가소127601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C을 대리한 D는 1994. 11. 11.경 E과 사이에 ‘A’이라는 상호로 염료 제조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이익금을 50%씩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2004. 6. 25.경 위 ‘A’은 형광염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원고가 설립되었다.

다. 피고는 2003. 1. 1.부터 2020. 12. 31.까지 원고 회사에 원료를 납품하는 F 주식회사의 영업팀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라. 위 E은 ‘E이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04. 9. 10.경부터 2012. 11. 1.경까지 82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납품대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합계 81,943,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고, 2014. 8. 29.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G은 2014. 6. 23.경 ‘2006. 8. 9.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12,150,343원의 원고 회사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 5, 7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 형광염료를 납품하는 F 주식회사에 재직하면서 원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 E 및 등기부상 대표 G과 공모하여 2008. 7. 14.부터 2010. 2. 5.까지 원고 회사의 공금 합계 17,5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F 주식회사에 재직하면서 원고가 H에 형광증백제 납품을 함에 있어 기술자문 및 업무컨설팅을 해주는 대가로 E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적은 있으나 원고로부터 금원을 받거나 원고의 공금을 횡령한 적이 없다.

3. 판단

먼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2. 2.부터 2010. 2. 5.까지 11회에 걸쳐 E으로부터 12,5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기재는 ‘2008년 F(주) B 영업부장 출금내역’이라는 제목하에 2008. 7. 14.부터 2010. 2. 5.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17,500,000원이 수표지급 또는 송금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바, 그 내역 중 12,500,000원의 송금내역은 위와 같이 피고가 E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과 일시가 서로 일치하기는 하나, 그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를 운영하던 E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았다고 하여 그 금원이 원고 회사의 공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피고는 E이나 G이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피고가 E, G과 공모하여 원고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민, 판사 윤웅기, 판사 신재환